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7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9(목) 배포즉시)

배포일시	2018. 7. 19. 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
담당과장	채규남 과장(044-203-5860) 고재강 과장(044-203-5870)	담 당 자	심상수 사무관(044-203-5874) 박성정 주무관(044-203-5868)

무역위원회, 중국산 타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7월 19일(목) 제379차 회의를 개최하여,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,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.06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*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'05.12월부터 수출자별로 9.06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

○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 시장규모는 '16년 기준 약 7,000억원, 이 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60%, 국내산은 약 30% 수준이다.

○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,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,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.

-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'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이다.

○ 또한, '16년 중국의 도자기질 타일 생산능력은 '13년 대비 크게 증가(약 22%)하였으나, 동 기간 가동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잉여 수출여력이 더 커졌고, 세계 6개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위원회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요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하였다.

□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,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붙임 | **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재심사 개요**

□ 재심사 요청 개요

○ 요청인 : 대동산업(주), ㈜대보세라믹스, ㈜한보요업, 성일요업(주)

○ 요청서 접수일 : '17. 8. 22.(접수 : 기획재정부장관)

○ 피요청인 : 중국 광동지아준 등 21개사

○ 부과중인 덤핑률 : 9.07~29.41%

□ 재심사 대상물품

○ 품명 : 도자기질 타일(Ceramic Tiles)

* 점토, 고령토 및 장석 등을 주원료로 성형 및 소성공정 등을 거쳐 제조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mm~1,300mm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

○ 용도 :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' 삼재

Minist
Indus

□ 조사경과

○ '17.10.26. :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정(기획재정부)

○ '18.5.24. : 공청회 개최

○ '18.7.19 : 위원회 최종판정

□ 국내시장 현황('16년) : 약 7천억원 (약 200만톤)

구 분	국내산	중국산	기타국산
점유율	약 30%	약 60%	약 10%

□ 향후 일정

○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관보게재 ('18.10.25.까지)